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983

발의연월일: 2022. 6. 15.

발 의 자:이용우·강민정·홍정민

유정주 • 주철현 • 정필모

김주영 • 위성곤 • 김경만

양경숙 · 김상희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하고,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각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 및 실태를 조사하여 이러한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구청 공무원을 통해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강력 범죄에 이용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, 조사 결과 개인정보의 무단 열 람을 방지하는 안전장치의 미비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공공기관 의 개인정보 보호에 여전히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.

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하여금 매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리·감독을 더욱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) ①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·업무의 수행 및이 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평가(이하 "개인정보 보호수준평가"라 한다)하여야 한다.

-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- ③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.
-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고,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 다.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 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, 그 조치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 다.

⑤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기준·방법·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7조제2항제2호 중 "실태조사"를 "실태조사 및 개인정보 보호수준평가"로 한다.

제75조제4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1조의2(개인정보 보호수준 평
	가) ①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
	중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
	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에 대
	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대
	<u>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보호 정</u>
	<u>책·업무의 수행 및 이 법에</u>
	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
	평가(이하 "개인정보 보호수준
	평가"라 한다)하여야 한다.
	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
	호수준 평가에 필요한 경우 해
	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
	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	③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
	호수준 평가의 결과를 인터넷
	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
	있다.
	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
	호수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
	수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
	하여 포상할 수 있고, 개인정보
	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

제67조(연차보고) ① (생략)

-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야 한다.
- 1. (생략)
- 2.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실태 조사 등의 결과

3. ~ 6. (생략)

- 략)
 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

하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?	게
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 이	경
우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	장
은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~	실
하게 노력하여야 하며, 그 조기	치
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알려여) -
<u>한다.</u>	

- ⑤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기준・방법・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 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- 제67조(연차보고) ① (현행과 같 유)

 - 1. (현행과 같음)
 - 2. -----조사 및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----
 - 3. ~ 6. (현행과 같음)
- 제75조(과태료) ① ~ ③ (생 제75조(과태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<신 설>

<u>1.</u> (생 략)

2. ~ 11. (생 략)

⑤ (생 략)

-----.

1.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거짓으로 제출한 자

<u>1의2.</u> (현행 제1호와 같음)

2. ~ 11. (현행과 같음)

⑤ (현행과 같음)